

##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### 가. 품명

- Mcr-Wax. Microcrystalline Wax

### 나. 제품의 권고용도

- 용도 : 코팅, 페인트, 신너, 페인트 제거제 외

### 다. 제조자/공급자유통업자 정보

#### ☐ 제조자 정보

- 회사명 : S-OIL(주) 온산 공장
- 주 소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
- 담당부서 : 정유/유회공정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담당자 : 유회공정 담당자
- 전화번호 : 052) 231-3714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FAX 번호 : 052) 231-2209

#### ☐ 공급업자/유회업자 정보 : ( 상 동 )

#### ☐ 작성부서 : 정유/유회공정팀

## 2. 유해성·위험성

### 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
- 해당 사항 없음

### 나.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

#### ☐ 그림문자

- 해당 사항 없음.

#### ☐ 신호어

- 해당 사항 없음.

#### ☐ 유해·위험문구

- 해당 사항 없음.

#### ☐ 예방조치문구

##### 예방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##### 대응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##### 저장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폐기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(예. 분진폭발 위험성)

- 자료 없음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	CAS 번호	함유량(%)
Paraffin Wax		8002-74-2	94.8
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		64742-54-7	5.2

\*) 수소처리된 중질파라핀 (CAS No. 64742-54-7) 함유량 40 중량% 미만으로 비위험물임.

4. 응급조치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

- 15 분 동안 다량의 의 물로 깨끗이 씻어낼 것, 의사의 조치를 받을 것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- 접촉 시 화상 입은 경우와 똑같이 다룰 것

다. 흡입했을 때

- 신선한 곳으로 즉시 옮길 것, 호흡이 멎었을 경우 인공호흡 및 필요할 경우 산소를 공급할 것, 의사의 조치를 받을 것

라. 먹었을 때

- 의사의 조치를 받을 것

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- 자료 없음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(부적절한) 소화제

- 포말 소화제, CO<sub>2</sub>, Dry Chemical (고체 화공약품), 물 분무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- CO, CO2

## 다.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밀폐된 화재 장소에 들어갈 경우 산소마스크와 같은 호흡용 보호기구를 착용할 것
- 과열된 용기는 물로 식힐 것

## 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###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

- 점화원을 차단하고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누출을 중지 시킬 것
- 위험지역에서는 흡연, 불꽃 및 불을 금지할 것
-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지 시키고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을 제한할 것

###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제품이 토양이나 수원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
- 유출이 큰 경우에는 추후의 폐기를 위해 유출지역보다 넓게 둔덕을 쌓아둘 것

### 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
-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추후의 폐기를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

## 7. 취급 및 저장방법

### 가. 안전취급요령

- 열 및 습기를 피할 것

### 나. 안전한 저장방법

- 용기는 확실하게 밀폐시켜두고 처음 들어온 저장용기에 계속 저장할 것
- 고온으로부터 제품을 격리하여 저장할 것

##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### 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#### ☐ 국내규정

- 자료 없음

#### ☐ ACGIH 규정

- 자료 없음

#### ☐ 생물학적 노출기준

- 자료 없음

**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**

- 작업장 전체 환기 및 국소 배기시설 설치할 것

**다. 개인보호구**

**㉠ 호흡기 보호**

- 고온의 증기에 노출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

**㉠ 눈 보호**

- 보호안경을 착용함

**㉠ 손 보호**

- 화공약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갑(예: 고무장갑)을 착용함

**㉠ 신체 보호**

- 손 보호 시와 마찬가지로 피부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

**9. 물리화학적 특성**

**가. 외관**

**㉠ 색상**

- 투명한 액체

**나. 냄새**

- 탄화수소 냄새

**다. 냄새역치**

- 자료 없음

**라. pH**

- 자료없음

**마. 녹는점/어는점**

- 녹는점 : 65 ~ 70 °C

**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**

- 자료 없음

**사. 인화점**

- 270 °C ~ 290 °C

**아. 증발속도**

- 자료 없음

**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**

- 고체

**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**

- 해당 없음

**카. 증기압**

- 자료 없음

**타. 용해도**

- 녹지 않음

**파. 증기밀도**

- 자료 없음

**하. 비중**

- 0.85

**거. n-옥탄올/물분배계수**

- 자료 없음

**너. 자연발화온도**

- 해당 없음

**더. 분해온도**

- 자료 없음

**러. 점도**

- 9 ~ 10 cst (@100 °C)

**머. 분자량**

- 자료 없음

**10. 안정성 및 반응성**

**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**

-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, 물과 반응하지 않으며 분리됨

**나. 유해반응의 가능성**

- 없음

**다. 피해야 할 조건**

- 열, 화기, 고온 조건 (54°C 이상)

**라. 피해야 할 물질**

- 없음

**마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**

- 불완전 연소 시 CO 생성

**11. 독성에 관한 정보**

**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**

- 자료 없음

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급성독성

경구

- 자료 없음

경피

- 자료 없음

흡입

- 자료 없음

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

- 자료 없음

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

- 자료 없음

호흡기과민성

- 자료 없음

피부과민성

- 자료 없음

발암성

- 해당 없음

생식세포변이원성

- 자료 없음

생식독성

- 자료 없음

특정 표적장기 독성 (1 회 노출)

- 자료 없음

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

- 자료 없음

흡인유해성

- 자료 없음

㉔ 기타 유해성 영향

- 자료 없음

다. 독성의 수치적 척도 (급성독성 추정치 등)

- 자료 없음

##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생태독성

㉔ 어류

- 자료 없음

㉔ 갑각류

- 자료 없음

㉔ 조류

- 자료 없음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㉔ 잔류성

- 자료 없음

㉔ 분해성

- 자료 없음

다. 생물농축성

㉔ 농축성

- 자료 없음

㉔ 생분해성

- 자료 없음

라. 토양이동성

- 자료 없음

마. 기타 유해 영향

- 자료 없음

## 13.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

- 폐기물은 승인된 산업용 쓰레기 매립지에 매립

나. 폐기시 주의사항

- 다량일 경우 적절한 연소, 소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것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유엔번호(UN No.)

- 자료 없음

나. 적정선적명

- 자료 없음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

- 자료 없음

라. 용기등급

- 자료 없음

마. 해양오염물질

- 자료 없음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

- 자료 없음

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- 노출기준 설정물질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해당 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해당 없음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를 반드시 확인 후 폐기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☐ 국내규제

- 자료 없음

☐ 국외규제

- 자료 없음

16.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

- S-OIL(주)의 자체 실험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

나. 최초작성일자



- 1996-07-01

**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**

② **개정횟수**

- 8 회

② **최종 개정일자**

- 2022-07-12

**라. 기타**

- EU 위원회는 IP 346 에 의해 측정했을 때 3% 미만의 DMSO(Dimethyl Sulfoxide)를 함유하는 물질에 대해서 발암 물질로 분류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였음.